

1. 개정 이유

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담배도매업,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담배도매업,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,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됨을 안내(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 :

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,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담배판매업 휴업·폐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상호(법인명)		전화번호	
	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소재지			
	사유			
	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(일간)	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 []수입판매업 []도매업의 []휴업 []폐업을 신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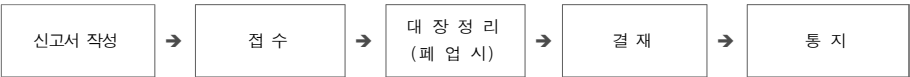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	-----------

참 고 사 항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폐업신고 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제출된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.

처 리 질 차



신고인 처리기관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담배업무 담당 부서(수입판매업) 시·군·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(도매업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소매업휴업·폐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전화번호	
	영업소 위치		상호(법인명)	
	사유			
	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			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업의 []휴업 []폐업을 신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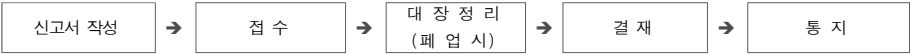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	-----------

참 고 사 항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제출된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.

처 리 질 차



신고인 처리기관: 시·군·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